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법인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5581호, 2018. 4.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표권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상표권자에게 발급하는 상표등록증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가 상표권 등의 이전등록 후 별도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25. ~ 7.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 중 “자만으로”를 “자로”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2항 중 “자”를 “자(등록증 또는 영어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8조제2항제3호 중 “자만으로”를 “자로”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8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상표등록출원) ① ~ ③ (생 략)</p> <p>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u>자만으로</u>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p> <p>2.·3. (생 략)</p> <p>⑤ ~ ⑦ (생 략)</p> <p>제55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①</p> <p>특허청장은 상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또는 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그 상표권자, 단체표장권자, 증명표장</p>	<p>제28조(상표등록출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1. ----- ----- ----- ----- <u>자료</u> ----- ----- ----- -----</p> <p>2.·3. (현행과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55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① ----- ----- ----- ----- -----</p>



1. ~ 3. (생략)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 자(등록증 또는 영어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  
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  
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  
다)

4. (생략)

③ (생략)

-----  
-----  
----- 자료 -----  
-----  
-----  
-----  
-----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